

Ⅲ. 예산총칙



제1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9,635,500,000	289,065,000
일 반 회 계	8,445,000,000	253,350,000
특 별 회 계	1,190,500,000	35,715,000
기 타 특 별 회 계	1,190,500,000	35,715,000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613,450,000	18,403,500
치 수 사 업	4,910,000	147,300
광 역 교 통 시 설	7,020,000	210,6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93,340,000	2,800,20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49,290,000	1,478,700
낙 후 지 역 발 전	7,000,000	210,000
소 방 안 전	415,490,000	12,464,7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4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